

『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상에서 대상 및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주차수급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자 함.
- 「주차장법」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,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/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-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면제 사항을 규정하며 우수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주차장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법 위임사항 정비

-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 조항 신설(안 제2조의2)
-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 완화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 2)
 - 철거 시 주차대수 총합의 50% 완화
-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법령상 설치기준으로 조정(안 제18조)
 -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→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

나. 주차요금 감면 포괄규정 삭제 및 대상 추가(안 제4조의2)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규정 삭제
-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전액 감면
- 「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 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전액 감면
- 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50% 감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,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현행 ‘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총 주차 대수’에서 법정 기준인 ‘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’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,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등 구체적인 면제 사항을 규정하며 주차장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